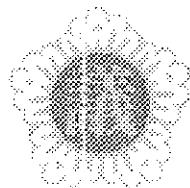


제225회 임시회
2004. 4. 2. (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3. 4. 2.(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3. 29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 법령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기업지원과】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법령을 정비함

【사회복지과】

-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함

【보건위생과】

- “나병”의 명칭이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대상 사무명을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 **기업지원과** 소관의 산업단지관리권한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2002.12.30, 법률제06842호)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며,
- 보건위생과 소관의 나병 명칭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0.1.12, 법률 제06162호)으로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사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 법령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업지원과】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법령을 정비함

【사회복지과】

-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함

【보건위생과】

- "나병"의 명칭이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대상 사무 명을 정비함

□ 의안전문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의 근거 및 적용법규란중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란을 삭제하며, 보건위생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란중 제10호내지 제12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보건위생과	7	○ 한센이동진료사업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충청 북도지부	전염병예방법제23조, 제48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기 업 지원과	6	< 생 략 >	<생 략>	포업배치및공 간설립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기 업 지원과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감독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 제30조, 제31조
사 회 복지과	7	○ 장애인체활에 관한 다음사항	(사)한국 장애인체 활협회총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20조	사 회 복지과		< 삭 제 >		
	8	□ 장애인 보장구 구제 지원 사업	(사)한국 장애인복지법제 제23조 활협회총 복지부	장애인복지법제 제23조			< 삭 제 >		
보 건 위생과	9	나이동진료사업 업무	대한나이 리협회총 침부도자 부	전염병예방법 제23조, 제48조	보 건 위생과	7	한세이동진료사업 업무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23조, 제48조 충청북도 지부	전염병예방법 복지협회 제23조, 제48조
신림과	10	< 생 략 >			신림과	8	<현행과 같음>		
체육청 소년과	11	< 생 략 >			체육청 소년과	9	<현행과 같음>		
교통과	12	< 생 략 >			교통과	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안·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⑥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장애인의 날) 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경비, 제1군 및 제2군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회에 관한 경비
7.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